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99
----------	------

2016년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년 11월 7일, 박양숙의원 외 17인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9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양숙)

- 한국은 1991년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 하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 아동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 아동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추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이런 가운데, 현재의 서울시 아동복지 정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 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보호 위주의 위기 아동 지원 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의 사후적·시설보호 중심의 서울시 아동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이며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함.
- 이에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제정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총 2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조례의 목적(제1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제3조), 아동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제4조)함.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로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5조~6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제7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2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제9조),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시 반영하도록 하며(제10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함(제11조).
  - 또한, 아동의 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제12~15조)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제16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제18조) 함.

<표1.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제2조(정의)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3조(책무)	제14조(아동 역량강화)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업무의 협조)
제8조(기능)	제19조(경비 지원)
제9조(실태조사)	제20조(시행규칙)
제10조(아동영향평가)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관한 기본 권리(4대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6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하였음.
- 동 협약은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공하고, 각 조항은 실제적인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각 나라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동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 일반원칙은 다음의 <표 2>와 같음 .

<표2.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및 4대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존권:</b>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li> <li>· <b>발달권:</b>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li> <li>· <b>보호권:</b> 각종 위협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li> <li>· <b>참여권:</b>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li> </ul>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무차별의 원칙 :</b>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li> <li>· <b>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b>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li> <li>· <b>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b>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li> <li>· <b>아동 의견 존중 원칙:</b>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li> </ul>

-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상기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 한 실체라 할 수 있는데,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및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UNICEF, 1996)이며, 아동의 요구 및 권리가 법, 정책, 프로그램, 예산 등에 고루 반영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 받으며 생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의 추진은 UN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인 IRC(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를 설립하고 세계 각국의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됨.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힘입어 201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전국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9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 바 있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은 지역사회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아동의 참여 보장</b>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 청취 및 고려</li> <li>2. <b>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b>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li> <li>3. <b>아동권리 전략 개발</b> : UN 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 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의 개발</li> <li>4. <b>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b>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li> <li>5. <b>아동영향 평가 실시</b>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li> <li>6. <b>아동관련 예산의 확보</b>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 지 분석</li> <li>7. <b>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b>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 수집</li> <li>8. <b>아동권리 홍보</b>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홍보</li> <li>9. <b>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b>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ombuds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li> <li>10. <b>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b>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시행</li> </ol>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고, 결국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의 법적 효력을 국내법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로서의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2017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지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 4차 권고사항 이행평가 및 우선 이행과제 파악을 위한 평가에서도 적지 않은 불이행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임(김진석 외, 2016<sup>1)</sup>).

- 한편, 현재의 서울시 아동정책은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사후대책 위주의 분절적이며 단편적인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으로, 모든 아동을 포괄하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상황임.
-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의 사후적이며 시설보호 위주였던 아동복지정책을 넘어 사전 예방적이며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조례안의 구성과 전반적인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려는 아동의 4대 권리와 4대원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아동을 권리의 객체에서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한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안의 시행 상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다”는 입장임.

### 3. 조항별 검토의견

#### 1)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대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제시함.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4대 일반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 한 것으로 이해됨.

1)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 연구’ 서울여자산학협력단

##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6조 관련)

-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을 5년 수립하게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러한 중장기 및 단기 계획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라 할 것인바, 향후 서울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시 앞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해 온 유럽의 주요 선진 사례들(예.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페인 세비아 등)의 시사점을 참고해 볼만 함. 특히 국가수준의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과 연동하여 아동정책관련 기본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25개 자치구의 친화도시 추진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김진석 외, 2016).

##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안 제7조~8조 관련)

- 안 제7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각종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8조) 함.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 위원회의 설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 실행전략이 미흡한 현재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동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의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함)’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제7조제2항)하고 있는데,
  - 기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한 기구<sup>2)</sup>로,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고려해볼 때, 본 제정안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 짐.

#### 4) 실태조사 (안 제9조 관련)

- 안 제9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이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시 관내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아동 중심의 정책개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것임. 아동친화도시의 10대 원칙에도 정기적인 아동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은 아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준의 정보나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 5) 아동영향평가 (안 제10조 관련)

- 안 제10조에서는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아동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함.

#### 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의무과제로서, 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 및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법률·정책·실천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제도적 명문화를 통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을 통하여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정책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짐.
- 다만, 향후 아동영향평가가 실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과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는 서울시 행정조직의 모든 활동이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6) 아동 참여위원회 (안 제16조 관련)

- 안 제16조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함(제1항).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 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아동 참여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0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아동의 ‘참여권’의 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물론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10대 원칙에서도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이는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issues)에 관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귀 기울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함을 의미함.
- 상기 아동참여위원회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함)’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동 참여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만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제정안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수 있음. 따라서 상기의 규정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를 기존의 참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인바, 향후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머무르지 않고 실행력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견고히 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시책 추진 바람.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9
----------	------

발의년월일 : 2016년 11월 7일

발 의 자 : 박양숙 · 박호근 · 유동균 · 김기대  
이정훈 · 오승록 · 유찬종 · 박기열  
우형찬 · 이윤희 · 허기희 · 우창윤  
문형주 · 신원철 · 김창원 · 김정태  
유 청 · 이병해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한국은 1991년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 하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하였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한국 아동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 아동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OECD국가들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비추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 이런 가운데, 현재의 서울시 아동복지 정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 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보호위주의 위기 아동 지원 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의 사후적·시설보호 중심의 서울시 아동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이며 모든 아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함.
- 이에 본 제정안은, 서울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안 제7조~8조)
- 마. 아동 실태조사, 아동영향 평가 실시(안 제9조~제10조)

- 바.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안 제11조)
- 사. 아동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역량강화(안 제12조~제14조)
- 아.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안 제15조)
- 자. 아동참여위원회(안 제16조)
- 차. 교육 및 홍보, 업무 협조, 경비지원(안 제17조~제2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기 타 :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구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구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아동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아동 역량강화) 시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독서교육 및 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5.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 참여위원회



를 들 수 있다.

② 아동 참여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0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경비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철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에 따라 위원회 설치 비용발생
- 같은 조례안 제9조(실태조사),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14조(아동 역량강화)에 따라 사업 추진 비용발생
- 같은 조례안 제17조(교육 및 홍보)에 따라 교육 및 홍보 비용발생
- 같은 조례안 제19조(경비 지원)에 따라 비용발생

\* 단 제7조, 제16조는 기존 위원회에서 대체하므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에 따른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제외

**2. 미철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3. 미철부 사유**

-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다만 참고를 위한 구체적 추계 자료(참고)를 첨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주    무    관      최    경    희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

**【참고】 비용추계**

가. 추계결과 ≍635,000천원

- 5년간 635,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127,000천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함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제9조)	45,000	-	45,000	-	45,000	135,000
	교육 및 홍보비(제17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145,000	100,000	145,000	100,000	145,000	635,000
<b>총비용(b-a)</b>		<b>145,000</b>	<b>100,000</b>	<b>145,000</b>	<b>100,000</b>	<b>145,000</b>	<b>635,000</b>

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 실태조사비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비를 준용하여 산출
- 물가변동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실태조사비

- 총비용 =  $\sum_{i=1}^3 (\text{실태조사비})_i = 135,000\text{천원}$   
 = 실태조사비 × 3회(추계기간 2년마다 한번)
- 실태조사비 : 45,000천원

항목	예산액(단위:원)		비 고
계	45,000,000		산출내역
세부내역	항목	금액	
기간제근로자	위촉연구원 법정부담금 초빙연구원	21,717,450	· 위촉연구원 : 13,377,000(1,911,000 × 1명 × 7월) · 법정부담금 : 1,337,700(13,377,000 × 10%) · 초빙연구원 : 7,002,750(2,334,250 × 1명 × 3월)
회의운영비	회의수당 진행경비	2,550,000	· 수당 : 2,250,000(150,000 × 5명 × 3회) · 회의진행경비 : 300,000(20,000 × 5명 × 3회)
조사 및 평가비	설문조사, 조사원, 정리원, FGI , 진행경비 등	17,032,000	· 조사원 : 376,000(47,000 × 2명 × 4일) · 정리원 : 336,000(42,000 × 2명 × 4일) · 설문조사 : 15,000,000(30,000 × 500명) · FGI : 1,200,000(100,000 × 4기관 × 3회) · 진행경비 : 120,000(10,000 × 4명 × 3회)
일반운영비	자료구입비 자료인쇄비 일반관리비 등	3,700,550	· 자료구입비 : 300,000(20,000 × 15권) · 자료인쇄비 : 2,000,000(20,000 × 100부) · PC렌탈 : 746,900(106,700 × 7월) · 프린트렌탈 : 245,000(35,000 × 7월) · 자료발송비 : 90,000(10,000 × 9회) · 일반관리비 : 318,650(318,650 × 1식)

※ 자료 :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비 산출내역서

2) 교육 및 홍보비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500,000\text{천원}$  = 연간비용 × 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 : 100,000천원

항목	예산액(단위:원)	비 고
교육 및 홍보비	100,000,000	· 아동친화도시 인식개선 및 정책박람회 홍보 등 = 75,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교육 등 = 25,000천원

※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